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51
----------	-------

발의연월일 : 2025. 9. 22.

발 의 자 : 이인선 · 강승규 · 윤한홍
진종오 · 고동진 · 김위상
박충권 · 구자근 · 박성훈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주요국가들의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 산업정책 및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기업들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내 투자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국가차원의 선제적 사업재편 대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 기업활력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상 지원은 자산매각, 채무 인수·변제, 주식 교환, 합병 등에 대한 지원과 소극적 세제지원에 그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요인이 적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 기술 산업을 영위 중인 기업의 사업재편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하고자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액에 대한 현금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21

조의33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를 각각 제121조의35부터 제121조의37까지로 하고, 제5장의10에 제121조의33 및 제121조의3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33(사업재편승인기업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기업생산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재편승인기업이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한 후 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판매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사업재편기업생산제품 판매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34(사업재편승인기업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환급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사업재편승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의33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 받으려는 사업재편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1조의33(사업재편승인기업의</u> <u>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성장·원</u> <u>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또는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을</u> <u>활용한 제품(이하 이 조에서</u> <u>“사업재편기업생산제품”이라</u> <u>한다)에 관한 생산업을 영위하</u> <u>고 있는 사업재편승인기업이 국</u> <u>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한 후</u> <u>203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u> <u>판매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판매</u> <u>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u> <u>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u> <u>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계산한 사업재편기업생산제품</u> <u>판매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u> <u>하는 금액을 해당 제품이 판매</u> <u>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u> <u>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u> <u>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u> <u>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u> <u>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u> <u>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u>

<신 설>

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34(사업재편승인기업의

국내생산세액공제 환급 특례)

①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2개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

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

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

한 사업재편승인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생

산한 제품(사업재편승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121조의33에 따라 공

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공제금

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

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

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

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 받으려는 사업재편승인기

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u>제121조의33</u> ~ <u>제121조의35</u> (생략)	<u>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u> ④ <u>사업재편승인기업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미공제금액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그 미공제금액에 대하여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⑤ <u>제1항을 적용할 때 미공제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21조의35</u> ~ <u>제121조의37</u> (현행 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와 같음)
---	---